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98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3. 7.

박종길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박종길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ESG(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경영이 범인류적인 과제가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ESG관련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ESG경영과 관련하여 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5조~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수립시 필요한 사항과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7조~제8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9조는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공적을 세운 기업, 기관, 사람의 포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7월 7일부터 2023년 7월 17 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3084
----------	----------

발의연월일: 2023. 7. 7.

발의자: 박종길, 김장관, 이선주,  
이영빈, 서보영, 임미연,  
김기열, 고명욱, 박정환

##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라.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마. 연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1
- 나. 관계법령 : 붙임 2
  - 「지방자치법」 제13조
  - 「산업발전법」 제18조, 제19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 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중소기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이하 “기관과 기업”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견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기후 위기 변화 대응
5.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7.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8.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9.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0.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제7조(연구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ESG 경영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수립
2.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실태 조사
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4.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5. ESG 경영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 기관,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 산업발전법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